공 개

의안번호	제 293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의결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서 발표한 증권의 공모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소액공모 범위 확대, 벤처펀드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전문가로서 공모 기준 대상자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

다. 투자자 등급별 차등화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파생상품등' 정의규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7. ~ 2026.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24.) 심의필

바.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별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2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제120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현행과 같음)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 ---------- ---------- ---------- ---------- ---------- ---------- ---------- ---------- ---------- ---------- ---------- ---------- ---------- ---------- ------- 30억원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2. ---------- ---------- ----------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30억원 ----------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다목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
<신 설>	제55조의2(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1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그 밖에 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신 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기업공시국
연 락 처	02-2100-2644	02-3145-8485